

고 양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【제 1126 호】

2014년 11월 17일 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회 랑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

차 례

조 례

고양시조례 제1617호	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1
고양시조례 제1618호	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	11
고양시조례 제1619호	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18

발행 : 고 양 시

편집 : 공보담당관

(우) 412-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(주교동 600) ☎ (031) 8075-2095

고양시의회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.

고 양 시 장 최 성 인

2014년 11월 17일

고양시 조례 제1617호

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시”를 “고양시”로 하고, “각급 학교(이하 “각급 학교”라 한다)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또는 각급 학교에 교육지원사업”을 “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또는 교육지원사업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각급 학교”를 “고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(이하 “각급 학교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제2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교육업무 담당 국장
 - 2.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
 - 3. 고양시의회 의원
 - 4. 사회단체관계자
 - 5.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 - 6.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
제9조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2.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
3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고양시”를 “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밖에”로,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3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제14조제1항에 의하여”를 “제14조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과		평생교육과
입 안 자	과 성 장 명	평생교육과장 윤 홍 구
	팀 성 장 명	교육협력팀장 이 기 룬
	담 당 자 성명·전화	한 은 희 (8075-228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고양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<u>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(이하 “각급 학교”라 한다)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또는 각급 학교에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따라 <u>고양시</u> <u>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또는 교육 지원 사업</u></p>
<p>제2조(교육지원사업) 고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교육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<u>각급 학교에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2조(교육지원사업) <u>고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(이하 "각급 학교"라 한다).</u>.....</p>
<p>제3조(보조사업의 범위)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“보조사업”이라 한다) 및 각급 학교에 시행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</p>	<p>제3조(보조사업의범위)..... 1.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그 밖에</u></p>
<p>제4조(보조사업의 기준액)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보조사업의 기준액) <u>범위에서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보조사업의 신청 등) ① 보조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장은 <u>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5조(보조사업의 신청 등)</p> <p>.....</p> <p><u>각 호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~ 4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에</u>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에</u></p> <p>.....</p>
<p>제6조(교육발전심의위원회) 각급 학교 보조사업의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 및 <u>기타</u> 교육관련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6조(교육발전심의위원회)</p> <p>.....</p> <p>.... <u>그 밖의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교육업무 담당 국장, 고양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, 시의회 의원, 경기도 교육위원, 사회단체관계자, 그 밖의 교육에 관심 있는 인사 및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	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p>1. <u>교육업무 담당 국장</u></p> <p>2. <u>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</u></p> <p>3. <u>고양시의회 의원</u></p> <p>4. <u>사회단체관계자</u></p> <p>5. <u>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(생략)</p> <p>제9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업무 주관 과장이 되며,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.</p> <p>제10조(회의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p> <p>2.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</p> <p>3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11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보조사업 범위의 우선순위</p> <p>2. 당해연도 보조사업 대상 선정,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</p>	<p>6.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간사) 1명</p> <p>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p> <p>2.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</p> <p>3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</p> <p>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11조(기능) ① 1. 2. <u>해당연도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3. <u>고양시</u> 교육지원사업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</p> <p>4. <u>기타</u> 시장이 <u>부의하는</u> 사항 ② (생략)</p> <p>제12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수당,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시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3조(회의록)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14조(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)</p> <p>① 시장은 <u>제5조의 규정에 의한</u>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<u>범위 안에서</u>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보고 및 검사) 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시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</p>	<p>3. <u>시</u></p> <p>.....</p> <p>4. <u>그 밖에</u> <u>회의에 부치는</u>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2조(수당) 범위 에서</p> <p>제13조(회의록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</p> <p>제14조(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)</p> <p>① <u>제5조에 따른</u></p> <p>② <u>범위에서</u></p> <p>제16조(보고 및 검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라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장부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제17조(목적외 사용의 금지)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</p> <p>③ (생략)</p>	<p>..... .</p> <p>제17조(목적외 사용의 금지) ① 제 14조 제 1 항 에 따 라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따 른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□ 개정 이유

- 「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변동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된 교육의원 폐지) 요인을 반영하여 경기도 교육위원을 삭제하고,
-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영향평가 결과,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포괄편성 금지, 대상사업 조기 선정 검토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시기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 관련 교육의원제 폐지에 따라 경기도 교육위원 삭제(안 제7조제3항)
- 심의위원회 개최시기를 명문화 하고자 함(안 제10조제1항, 제2항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,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

고양시의회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.

고 양 시 장 최 성 인

2014년 11월 17일

고양시 조례 제1618호

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과		체육진흥과
입 안 자	과 성 명	체육진흥과장 김 치 영
	팀 성 명	체육정책팀장 박 교 원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 승 원 (8075-2323)

[별표 1]

전 용 사 용 료

시 설 별		사용구분		사 용 료 (단위 : 원)			
				체 육 경 기		체육이외 행사	
주경기장	육상장(트랙)	주 간	4시간	40,000	60,000	200,000	300,000
		야 간	"	60,000	90,000	300,000	400,000
	축구잔디구장	주 간	3시간	660,000	2,000,000	1,500,000	2,200,000
		야 간	"	1,500,000	2,400,000	2,000,000	2,600,000
	보조경기장	주 간	2시간	200,000	300,000	300,000	400,000
		야 간	"	240,000	360,000	360,000	480,000
실내체육관	주 경 기 장	주 간	4시간	80,000	100,000	450,000	550,000
		야 간	"	100,000	130,000	550,000	650,000
	보조경기장	주 간	4시간	30,000	50,000	100,000	150,000
		야 간	"	50,000	70,000	120,000	170,000
일반축구장 (인조잔디)		주 간	1시간	25,000	35,000	35,000	50,000
		야 간	"	30,000	42,000	50,000	70,000
인라인스케이트장		주 간	4시간	50,000	90,000	100,000	200,000
		야 간	"	80,000	100,000	200,000	300,000
테 니 스 장		면 당	4시간	24,000	32,000	-	-
수 영 장 (다이빙풀 제외)		주 간	4시간	400,000	600,000	800,000	1,200,000
		야 간	"	600,000	900,000	1,200,000	1,800,000
다 이 빙 풀		주 간	3시간	200,000	300,000	400,000	600,000
		야 간	"	300,000	450,000	600,000	900,000
빙 상 장		06:00 ~ 10:00 20:00 ~ 24:00	1시간	80,000	90,000	400,000	400,000
		10:00 ~ 20:00	"	90,000	120,000	400,000	400,000
인공암벽장		주 간	2시간	25,000	30,000	-	-
		야 간	"	37,500	45,000	-	-
체육회관 연회장		1시간		-	-	60,000	72,000
이 벤 트 홀		1시간		-	-	20,000	24,000
다목적 체육관		주 간	4시간	60,000	90,000	220,000	330,000
		야 간	"	90,000	135,000	330,000	495,000
전용배드민턴장		주 간	4시간	60,000	90,000	220,000	330,000
		야 간	"	90,000	135,000	330,000	495,000
야구장		주 간	3시간	80,000	120,000	180,000	270,000
		야 간	"	110,000	170,000	280,000	600,000
리틀 야구장		주 간	3시간	56,000	84,000	180,000	270,000
		야 간	"	77,000	119,000	280,000	600,000
실내야구연습장		주 간	2시간	30,000	45,000	110,000	160,000
		야 간	"	45,000	65,000	160,000	220,000
스쿼시, 라켓볼장		주 간	1시간	20,000	30,000	40,000	60,000
		야 간	"	30,000	45,000	60,000	90,000
파크골프장		주 간	2시간	50,000	80,000	-	-
		야 간	"	80,000	120,000	-	-
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○ 일반축구장의 천연잔디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의 30%를 가산함. 단 토사축구장은 무료 ○ 주경기장 사용료는 육상장, 축구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○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%, 체육회관 연회장, 이벤트홀의 야간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20%를 가산함 ○ 기준시간을 초과한 사용허가 시,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환산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. 단, 빙상장은 30분 단위의 환산요금 적용할 수 있다. ○ 상기의 전용사용료는 부속시설 사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부속시설 사용 시는 별도 사용료(별표 5)를 납부하여야 한다.
-----	---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사용료)</p> <p>① <u>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9조(사용료)</p> <p>① <u>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

전용사용료

[별표 1]

시 설 별	사용구분	사 용 료 (단위 : 원)			체육이의 행사
		평 일	토·공휴일	체 육 경 기	
주 경 기 장	육상장(트랙)	주 간 4시간 야 간 "	40,000 60,000	200,000 300,000	토·공휴일 300,000
	축구전디구장	주 간 3시간 야 간 "	660,000 2,000,000	1,500,000 2,200,000	400,000 2,200,000
		주 간 2시간 야 간 "	1,500,000 2,400,000	2,000,000 2,600,000	2,600,000
		주 간 4시간 야 간 "	200,000 360,000	300,000 480,000	400,000
	보조경기장	주 간 4시간 야 간 "	80,000 100,000	100,000 150,000	550,000 650,000
실내체육관	주 경 기 장	주 간 4시간 야 간 "	100,000 30,000	130,000 50,000	150,000
	보조경기장	주 간 4시간 야 간 "	50,000 25,000	70,000 35,000	170,000
		주 간 1시간 야 간 "	30,000 42,000	50,000 70,000	50,000
일반체육장 (인조잔디)	인라인스케이팅장	주 간 4시간 야 간 "	50,000 80,000	100,000 200,000	200,000
		주 간 2시간 야 간 "	24,000 32,000	-	-
		주 간 4시간 야 간 "	400,000 600,000	800,000 1,200,000	1,200,000
다이빙풀	수영장 (다이빙풀 제외)	주 간 3시간 야 간 "	600,000 200,000	900,000 400,000	1,800,000
		주 간 4시간 야 간 "	300,000 450,000	600,000 900,000	900,000
		주 간 1시간 야 간 "	80,000 90,000	400,000 400,000	400,000
빙상장	인공빙장	주 간 2시간 야 간 "	90,000 25,000	120,000 30,000	400,000
		주 간 1시간 야 간 "	37,500	45,000	-
		주 간 4시간 야 간 "	60,000	20,000	72,000
체육회관 연회장	다목적 체육관	주 간 4시간 야 간 "	60,000 90,000	90,000 135,000	24,000 330,000
		주 간 3시간 야 간 "	60,000 90,000	90,000 135,000	330,000
		주 간 2시간 야 간 "	60,000 90,000	90,000 135,000	495,000
아구장	리틀 야구장	주 간 4시간 야 간 "	80,000 110,000	120,000 170,000	270,000
		주 간 3시간 야 간 "	56,000 77,000	84,000 119,000	600,000
		주 간 2시간 야 간 "	30,000 45,000	40,000 60,000	90,000
스피시, 라켓볼장	파크볼프장	주 간 4시간 야 간 "	20,000 30,000	30,000 45,000	60,000
		주 간 3시간 야 간 "	10,000 15,000	15,000 22,500	30,000
		주 간 2시간 야 간 "	5,000 7,500	7,500 11,250	15,000
비고	체육회관 연회장	주 간 4시간 야 간 "	60,000 90,000	90,000 135,000	24,000 330,000
		주 간 3시간 야 간 "	60,000 90,000	90,000 135,000	330,000
		주 간 2시간 야 간 "	60,000 90,000	90,000 135,000	495,000

- 축구전디구장 타인마경은 사용자가 함
- 일반체육구장의 정면잔디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의 30%를 가산함. 단 토사축구장은 무료
- 주경기장 사용료는 육상장, 축구전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
-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%, 체육회관 연회장, 이벳트홀의 야간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20%를 가산함
- 기동시간을 초과한 사용료가 시, 조파사용료는 시간당 확산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. 단, 밤상장은 30분 단위의 확산요금 적용할 수 있다.
- 상기의 전용사용료는 부속시설 사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부속시설 사용 시는 별도 사용료(별표 5)를 납부하여야 한다.

개정안

전용사용료

[별표 1]

시 설 별	사용구분	사 용 료 (단위 : 원)			체육이의 행사
		평 일	토·공휴일	체 육 경 기	
주 경 기 장	육상장(트랙)	주 간 4시간 야 간 "	40,000 60,000	200,000 300,000	토·공휴일 300,000
	축구전디구장	주 간 3시간 야 간 "	660,000 2,000,000	1,500,000 2,200,000	400,000 2,200,000
		주 간 2시간 야 간 "	1,500,000 2,400,000	2,000,000 2,600,000	2,600,000
		주 간 4시간 야 간 "	200,000 360,000	300,000 480,000	400,000
	보조경기장	주 간 4시간 야 간 "	80,000 100,000	100,000 150,000	550,000 650,000
실내체육관	주 경 기 장	주 간 4시간 야 간 "	100,000 30,000	130,000 50,000	150,000
	보조경기장	주 간 4시간 야 간 "	50,000 25,000	70,000 35,000	170,000
		주 간 1시간 야 간 "	30,000 42,000	50,000 70,000	50,000
일반체육장 (인조잔디)	인라인스케이팅장	주 간 4시간 야 간 "	50,000 80,000	100,000 200,000	200,000
		주 간 2시간 야 간 "	24,000 32,000	-	-
		주 간 4시간 야 간 "	400,000 600,000	800,000 1,200,000	1,200,000
다이빙풀	수영장 (다이빙풀 제외)	주 간 3시간 야 간 "	600,000 200,000	900,000 400,000	1,800,000
		주 간 4시간 야 간 "	300,000 450,000	600,000 900,000	900,000
		주 간 1시간 야 간 "	80,000 90,000	400,000 400,000	400,000
빙상장	인공빙장	주 간 2시간 야 간 "	90,000 25,000	120,000 30,000	400,000
		주 간 1시간 야 간 "	37,500	45,000	-
		주 간 4시간 야 간 "	60,000	20,000	72,000
체육회관 연회장	다목적 체육관	주 간 4시간 야 간 "	60,000 90,000	90,000 135,000	24,000 330,000
		주 간 3시간 야 간 "	60,000 90,000	90,000 135,000	330,000
		주 간 2시간 야 간 "	60,000 90,000	90,000 135,000	495,000
아구장	리틀 야구장	주 간 4시간 야 간 "	80,000 110,000	120,000 170,000	270,000
		주 간 3시간 야 간 "	56,000 77,000	84,000 119,000	600,000
		주 간 2시간 야 간 "	30,000 45,000	40,000 60,000	90,000
스피시, 라켓볼장	파크볼프장	주 간 4시간 야 간 "	20,000 30,000	30,000 45,000	60,000
		주 간 3시간 야 간 "	10,000 15,000	15,000 22,500	30,000
		주 간 2시간 야 간 "	5,000 7,500	7,500 11,250	15,000
비고	체육회관 연회장	주 간 4시간 야 간 "	60,000 90,000	90,000 135,000	24,000 330,000
		주 간 3시간 야 간 "	60,000 90,000	90,000 135,000	330,000
		주 간 2시간 야 간 "	60,000 90,000	90,000 135,000	495,000

- 축구전디구장 타인마경은 사용자가 함
- 일반체육구장의 정면잔디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의 30%를 가산함. 단 토사축구장은 무료
- 주경기장 사용료는 육상장, 축구전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
-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%, 체육회관 연회장, 이벳트홀의 야간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20%를 가산함
- 기동시간을 초과한 사용료가 시, 조파사용료는 시간당 확산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. 단, 밤상장은 30분 단위의 확산요금 적용할 수 있다.
- 상기의 전용사용료는 부속시설 사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부속시설 사용 시는 별도 사용료(별표 5)를 납부하여야 한다.

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

☐ 개정이유

- 신규 공공체육시설(실내야구연습장) 사용료를 신설하고 일부 체육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.(별표 1)

☐ 주요내용

- 사용료 규정의 단서 내용 삭제.(안 제9조제1항)
- 신규 공공체육시설(실내야구연습장) 사용료를 신설하고 일부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.(별표 1)

고양시의회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.

고 양 시 장 최 성 인

2014년 11월 17일

고양시 조례 제1619호

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,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시립어린이집 설치)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, 공장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③ 생략</p> <p>④ <u>시장은 시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6조(시립어린이집 설치)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,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③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□ 제안자 : 김효금·강주내·고은정·김필레·원용희·장제환 의원

□ 제정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9조의2가 개정됨에 따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을 개정하여 보육시설 우선설치지역을 반영하고,
- 같은 조 제4항에 시립어린이집의 설치에 예산확보, 건물준공시기 변경, 시립어린이집 설치 변경 등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아 사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함.

□ 주요내용

-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중 “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, 공장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”를 “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,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” 로 개정하여 우선설치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.
-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을 삭제함.